

대구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5.01.26. 교무위원회)

(개정 2017.06.14.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이라 한다)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 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별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별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개정 2017.06.14.)

① 폭력예방교육의 분야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한다.

② 폭력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과 남녀차별금지 기준
2. 사건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등 제재 조치
5. 신규 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등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7.06.14.)

제 2 장 성폭력 대책위원회

제6조 (설치)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구성원의 고충을 조사·처리 및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그리고 성희롱·성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우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제8조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우리 대학교 구성원으로부터 고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회의록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상담 및 처리

제15조 (상담)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차별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삭제 (2017.06.14.)

제16조 (조사와 보고) ① 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06.14.)

③ 신고는 성희롱·성폭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이를 교외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06.14.)

제17조 (징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주관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또는 시말서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개정 2017.06.14.) 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세기학원 관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